

의안번호	제 848 호
의 결 년 월 일	2004. 4. . (제 회)

의 결 사 항	
---------------	--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 출 자	정호용 위원외 6명
제출년월일	2004. 4. 27.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848
----------	-----

제출년월일 : 2004. 4. 27.

제 출 자 : 정호용위원외 6명

1. 수정이유

-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중 내용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 보완코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사회복지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다른 위원회 폐지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3항)

3. 본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와 장애인복지법 제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영유아보육법 제4조, 의료급여법 제6조, 아동복지법 제6조,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 사회복지 주요사업에 대한 연구·조정·건의·정책 및 제도 도입
3.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안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위임이 있을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 제2조제2항제1호중 “심의·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한다.

안 제2조제2항제1호중 가·나·다·라·마·바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계획 및 사업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 나.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자활공동체지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용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 다. 장애인복지사업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 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마. 노인복지 사업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 바. 노인복지시책 건의·개발 및 연구

안 제2조제2항제1호중 사 목 내지 자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생활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 아.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 자.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안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여성·아동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안 제2조제2항제2호중 가·다·마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여성복지사업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 다.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및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안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의료급여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안 제2조제2항제3호중 가 목 및 나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 나. 의료급여 일수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2항제3호중 다 목 및 라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의료급여사업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안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3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각 분과위원회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생활보장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안 제3조제3항중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인복지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4. 대한노인회고성군지회에서 추천하는 노인대표

안 제3조제3항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안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여성·아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안 제3조제4항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성대표
4.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안 제3조제5항 및 동조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⑤의료급여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생활보장분과위원회, 여성·아동분과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 의료급여분과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안 제6조제3항중 “제6조제1항제2항”을 “동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안 제7조제2항중 “군수 또는 제적위원 1/3이상위원”을 “제적위원 1/3이상위원”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중 “간사는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의 기금계정별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기금계정별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를 “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복지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사회복지담당자가 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의 기금계정별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기금계정별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안 제9조중 “위원회”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한다.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고성군아동위원회, 고성군보육위원회, 고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는 각각 폐지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재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와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기능) ①(생략)</p> <p>1. <u>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에관한 사항 심의 의결 및 기본계획수립</u></p> <p>2. <u>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연구·조정·건의</u></p> <p>3. <u>아동복지협의회설치및운용에관한사항 심의·의결</u></p> <p>4. <u>기타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u></p> <p>②위원회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 1과 같이 유사 기금별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둔다.</p> <p>1. 생활보장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가. <u>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에 관한 사항</u></p> <p>나. <u>기초생활보장기금(자활공동체지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유자금) 운용에 관한사항</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와 장애인복지법 제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영유아보육법 제4조, 의료급여법 제6조, 아동복지법 제6조,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u></p> <p>제2조(기능) ①(재정안과 같음)</p> <p>1. <u>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에관한사항 심의·의결</u></p> <p>2. <u>사회복지 주요사업에 대한 연구·조정·건의·정책 및 제도도입</u></p> <p>3. <u>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u></p> <p>4. <u>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u></p> <p>②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위임이 있을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p> <p style="padding-left: 20px;">-- 심의한다.</p> <p>가. <u>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계획 및 사업계정 운용에 관한사항</u></p> <p>나. <u>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자활공동체지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u></p>

제 정 안	수 정 안
<p><u>다.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u></p> <p><u>라. 의료급여기금운용에 관한 사항</u></p> <p><u>마.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u></p> <p><u>바. 기타 군수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u></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2. 여성정책발전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u>가. 여성정책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u></p> <p>나. (생략)</p> <p><u>다. 영유아의 보육 및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u></p> <p>라. (생략)</p> <p><u>마. 기타 군수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u></p> <p>3. 노인복지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u>가. 노인복지기금운용에 관한 사항</u></p> <p>나. 기타 군수가 심의를 필요로 하는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p> <p><신설></p> <p><신설></p> <p>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단, 각 분과위원회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p>	<p><u>다. 장애인복지 사업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u></p> <p><u>라.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제도 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u></p> <p><u>마. 노인복지 사업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u></p> <p><u>바. 노인복지시책 건의·개발 및 연구</u></p> <p><u>사. 생활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u></p> <p><u>아.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u></p> <p><u>자.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u></p> <p>2. 여성·아동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p> <p><u>가. 여성복지사업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u></p> <p>나. (제정안과 같음)</p> <p><u>다.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및 조사실시에 관한 사항</u></p> <p>라. (제정안과 같음)</p> <p><u>마.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u></p> <p>3. 의료급여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p> <p><u>가.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산 처분에 관한 사항</u></p> <p><u>나. 의료급여 일수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u></p> <p><u>다. 의료급여사업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u></p> <p><u>라.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u></p> <p>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3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제 정 안	수 정 안
<p>②위원은 <u>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u> 구성하고 <u>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항의 분과위원회별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u> <u>군수가 위촉한다.</u></p>	<p>②위원은 <u>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u> 구성하고 <u>당연직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u> <u>군수가 위촉한다.</u></p>
<p>다만, <u>각 분과위원회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u></p>	<p>다만, <u>각 분과위원회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u></p>
<p>③생활보장분과위원회는 <u>당연직위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15명 내외로 구성한다.</u></p>	<p>③생활보장분과위원회는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u></p>
<p>1.-2. (생략) 3. <u>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u> 4. <u>행정기관 소속공무원</u></p>	<p>1.-2. (제정안과 같음) 3. <u>노인복지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u> 4. <u>대한노인회고성군지회에서 추천하는</u></p>
<p><신설></p>	<p><u>노인대표</u></p>
<p>5. (생략)</p>	<p>5. <u>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u></p>
<p>④여성정책발전분과위원회는 <u>당연직위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15명 내외로 구성한다.</u></p>	<p>6. (제정안 제5호와 같음)</p>
<p>1. <u>여성단체협의회회장</u> 2. <u>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성3명</u></p>	<p>④여성·아동분과위원회는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13인 이내로 구성한다.</u></p>
<p>3. (생략)</p>	<p><삭제></p>
<p>4. (생략)</p>	<p>1. <u>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성대표</u></p>
<p><신설></p>	<p>2. (제정안 제3호와 같음)</p>
<p>5. (생략)</p>	<p>3. (제정안 제4호와 같음)</p>
<p>⑤노인복지분과위원회는 <u>당연직위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10인 내외로 구성한다.</u></p>	<p>4. <u>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u></p>
<p>1. <u>노인복지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u> 2. (생략)</p>	<p>5. (제정안과 같음)</p>
	<p>⑤의료급여분과위원회는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u></p> <p>1. <u>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u> 2. (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위원의 임기)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u>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제4조(위원의 임기) <u>생활보장분과위원회, 여성·아동분과위원회</u> 위원^의 임기는 2년, <u>의료급여분과위원회</u>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제5조(해촉) (생략)</p>	<p>제5조(해촉) (제정안과 같음)</p>
<p>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②(생략) ③분과위원장 등의 직무는 제6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②(제정안과 같음) ③----- 동조제1항 및 제2항 -----.</p>
<p>제7조(회의) ①(생략)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u>군수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시</u> 위원장이 소집한다.</p>	<p>제7조(회의) ①(제정안과 같음) ②----- ----- 재적위원 1/3이상위원 ----- -----.</p>
<p>③-⑤(생략) 제8조(간사) ①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간사는 <u>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의 기금계정별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기금계정별 소관업무담당자로 한다.</u></p>	<p>③-⑤(제정안과 같음) 제8조(간사) ① ----- -----. <u>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복지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사회복지담당자가 된다.</u></p>
<p><신설></p>	<p>②분과위원회의 간사는 <u>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의 기금계정별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기금계정별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u></p>
<p>제9조(실비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u>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u>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실비지급) 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 ----- -----.</p>
<p>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규칙으로</u> 정할 수 있다.</p>	<p>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규칙으로</u> 정한다.</p>

재 정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②(생략) ③(다른 위원회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사용자대상 선정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고성군아동위원회, 고성군보육위원회,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대상자선정위원회, 고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각각 폐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②(재정안과 같음) ③(다른 위원회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사용자대상선정위원회,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고성군아동위원회, 고성군보육위원회, 고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는 각각 폐지한다.</p>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와 장애인복지법 제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영유아보육법 제4조, 의료급여법 제6조, 아동복지법 제6조,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에관한사항 심의·의결
2. 사회복지 주요사업에 대한 연구·조정·건의·정책 및 제도도입
3.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위임이 있을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생활보장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계획 및 사업계정 운용에 관한사항
- 나.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자활공동체지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용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 다. 장애인복지사업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 라.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제도 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마. 노인복지기금사업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 바. 노인복지시책 건의·개발 및 연구
- 사. 생활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 아.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 자.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 여성·아동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가. 여성복지사업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 나.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 개발·연구
- 다.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및 조사실시에 관한 사항

라. 아동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3. 의료급여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가.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나. 의료급여 일수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다. 의료급여사업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3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기획 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생활보장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노인복지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4. 대한노인회고성군지회에서 추천하는 노인대표
5.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④여성·아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성대표
2. 여성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4.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⑤의료급여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생활보장분과위원회, 여성·아동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 의료급여분과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과위원장등의 직무는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 분과위원회로 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이상 위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소집한다.

④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복지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사회복지담당자가 된다.

②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의 기금계정별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기금계정별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실비지급)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제3조제9호 및 제14호는 삭제한다.

③(다른 위원회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고성군아동위원회, 고성군보육위원회, 고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는 각각 폐지한다.